##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16. 2015고단7911(분리), 8253(병합)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허인석, 이상현(기소), 이선기(공판)

【변호인】법무법인예지외1인

【주문】

]

1. 피고인 1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,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, 피고인 2를 징역 1년 4월에 각처한다.

2. 피고인 1로부터 20만 원을, 피고인 2로부터 10만 원을 각 추징하고,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